
테 마 진 단

◆ 선진국의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이상우 선임연구원

1.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투자형보험에 있어서도 적합성 원칙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기 앞서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제적 공통성과 차별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과 기본적인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은 판매자 등이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영업행위 원칙 중의 하나임.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 투자형보험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 등의 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보다 앞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금융권역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의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보험산업에 적합한 제도도입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고는 주요 선진국의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제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과 향후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여기에서는 선진국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입법사례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적합성 원칙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대한 국내 연구와 문헌조사가 부족하여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관련법과 통합금융법 체제의 입법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 적합성 원칙의 개념과 의의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은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극적 권유 원칙과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권유 원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를 광의의 개념으로, 후자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함

- 적합성 원칙은 1930년대의 불법적 증권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의 유래에서 정립됨.
 - 간판이론은 Charles Hughes 판결사례를 계기로 정립되었는데 간판을 내걸고 있는 브로커·딜러가 증권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권유내용에 고객에 대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적인 표시(implied representation)를 하였다고 보며,
 - 간판을 내 걸때는 합리적인 근거(resonable basis)가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권유 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이론임.

Charles Hughes 판결사례

- Charles Hughes사례는 증권브로커가 고객에게 특정 증권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강매시켜 증권거래위원회의(SEC)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임.
 - 1930년대 미국의 증권 중개업자 Charles Hughes가 미망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권유할 때 종전의 거래경험에서 얻은 신임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주식의 시세를 알리지 않은 채 시가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주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챙겨 고객이 이의 제기한 사례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SEC)는 설명하지 않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중개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사기행위로 판결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적합성 원칙은 “증권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투자자에게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함.
 - 즉, “적합성 원칙이란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개념의 적극적 권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투자상품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념의 소극적 권유 의무를 의미함.¹⁾
 - 적합성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는데 필요한 판매자의 고객정보 수집과 합리적인 투자분석자료 제공이 필수적임.
- 그러므로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반하는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결과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작동되기 위한 제도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적합성 원칙의 개념은 국가별로 금융제도 및 환경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적극적 권유 의무를 광의의 적합성 원칙으로 하고, 소극적 권유 의무를 협의의 적합성 원칙으로 구분함.²⁾
 - 적합성 원칙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떠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편익과 판매자의 법률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임.
 - 투자자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동되기 위한 전제로 판매자가 사전에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투자자의 피해에 대해서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따라서 적극적 개념인가, 소극적 개념인가에 따라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 개념 정의는 중요함.

1) 오성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6, p.110, 神崎克郎, 『平成10年改正商品取引法条解説』, 商事法研究会, 2000, p.80
 2) 潮見桂男, 『消費者契約法・金融商品販売法と金融取引』, 経済法令研究会, 2001

3. 자본시장통합법의 적합성 원칙

투자형보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협의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합성 원칙 이외에도 보험관련법상의 상품설명제도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도 적용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현행 규정보다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서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가질(제4-15조 2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투자권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법 46조).
 -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이유는 투자자의 두터운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현행의 증권업감독규정과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에 의한 광의의 적합성 원칙의 위반행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상법(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약관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함.
 - 특히, 변액보험은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보험료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시행령 제42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감독규정 제4-31조의2)에 근거하여 불완전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최근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상품설명 확인제도 및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보험업법 제97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 중요사항 알리지 않는 행위의 금지 등

4. 미국의 보험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 사례

미국은 변액보험에 대해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정과 NAIC의 모델법을 준용한 주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협의 혹은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 변액보험은 1950년대 말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SEC의 등록상품으로 판결한 이후 주 보험법과 연방 증권관련 법령상의 규제대상이 됨.
- 연방 증권법상에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규정을 두지 않고 증권업협회(이하 NASD)의 자율규정에 위임함.
 -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증권거래에 대한 행위규제의 원칙과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며, 일부의 행위규제에 대해서는 NASD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NASD의 자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변액보험의 모집인은 NASD 회원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NASD 규칙에 따라 “등록한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도록(제2310호)”하는 적합성 원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변액보험은 주식이나 무추열 펀드와는 달리 생명보험 상품이므로 변액보험(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은 “등록 판매원 등이 고객의 재산상태, 니즈 등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당해 고객이 변액보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와 보험료 납입 능력 여부를 검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NASD는 동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등록 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표1> 미국의 변액보험 규제

업무의 종류	근거법	규제 주체
변액보험·변액연금의 인수(발행)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각주의 보험청 증권거래위원회
변액보험·변액연금의 판매	각주 보험법 유가증권법(1933) 유가증권거래법(1934)	각주의 보험청 증권거래위원회
유닛의 구성	투자회사법(1940)	증권거래위원회

□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이하 NAIC)가 제정한 ‘변액생명보험 모델규칙’*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동 규칙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투자목적, 재정상태, 니즈 등의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당해 상품의 구입이 예비 고객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권유 및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조 c항).
- 또한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령, 수입, 배우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연령, 저축 및 기타 자산가치, 현재의 생명보험 가입의 상황”등 이른바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부여함.

* Variable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

** Know Your Customer Rule(이하 NYC Rule)

□ 일부 주 보험법에서는 NAIC의 ‘연금거래의 적합성 모델규칙(2006)*’을 준용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기도 함.

- 동 모델규칙은 NAIC가 2002년에 제정한 65세 이상 소비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거래의 고령자모델규칙’**을 모든 연령의 소비자를 가입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자 모델규칙의 내용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음.
- 동 모델규칙은 “모집인이 없는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연금 또는 연금 승환을 권유할 경우 상품이 적합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취하고 있음(제6조).

- 또한,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의 재산상태 및 니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 NYC Rule 의무를 부여함.
- NAIC에 의하면 현재(2006년 8월 기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주는 고령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에 대해 13개 州가,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에 대해 12개 州가 도입하였음.
- 다만, 州별 보험법에서 적합성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뉴욕주의 경우 연금상품에 대해서 NAIC의 모델을 반영하였으나(제308조(d)), 변액상품에 대해서는 SEC와 NASD의 규제를 준용함.

*연금거래의 적합성 모델규칙(Suitability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 2006)

**연금거래의 고령자모델규칙(Senior Protection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 2002)

<표2> 미국의 주 보험업법의 적합성 원칙 도입 현황

	연금		변액		생명보험
	고령자 대상	일반인 대상	보험	연금	개인보험
도입 수	13개 주	12개 주	32개 주	2개 주	9개 주

자료: NAIC(2006)

- 한편, 정액생명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여부를 위한 NAIC의 검토가 있었으나 보험업계의 반대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며, 보험업계의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변액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에는 원본 손실 리스크가 없음.
 - 생명보험은 미래지향적 계약, 장기계약, 불확실성 전가 등의 특성으로 권유시 사전에 상품의 객관적인 적합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증권상품은 등록제인 반면 보험상품은 인가제이므로 금융규제의 총체적 차원

에서 검토해야함.

- 고객정보 수집·집적·분석에 과도한 비용 소요 등임.

5. 영국의 보험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 사례

영국은 투자형보험에 대해서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투자형보험에 대해서는 최적의 권유상품이 아닐 경우 그 취지를 고객에게 설명한 후 권유하도록 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이후 투자형 생명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이 이를 계승하고 있음.
 - 영국 FSA의 금융영업규범에는 투자 및 저축성상품에 적용되는 일반영업행위규범(COB), 보장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비투자보험영업규범(ICOB) 등이 있음.
- 영국의 COB에 따르면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경우 그 권유가 확실히 고객에게 적합하도록(suitability)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함.
 - 특히,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most suitable)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하고, 만약 적절한 상품이 없을 경우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협의의 개념을 취하고 있음(COB 5.3.5R).
 -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NYC Rule을 부여하고, 해당 상품의 적합성 근거와 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적합성 통지서(suitability letter)를 계약 체결 전에 설명 및 제공하도록(COB 5.3.14R) 명시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독립금융중개자(이하 IFA)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함(COB5.3.10A·R).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 대부분 IFA단체가 제공하는 보험회사 상품정보 리스트를 활

- 용하여 상품을 권유함.
- 보장성보험을 규제하는 ICOB는 고객에게 “권유할 경우 그 권유가 고객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즉, “취급하는 상품 중 고객의 니즈와 완전히 일치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그 취지를 고객에게 설명한 후 다른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함 (ICOB4.3.1.R 등)
 -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의 수요 및 니즈를 기재하고,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고객수요확인서(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를 제공토록 함(ICOB4.4.1.R).
 -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투자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상품정보 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음(ICOB4.2.12.G).
 - FSA가 보장성보험에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FSA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설명의무의 수준을 높인다고 반드시 불완전판매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CP187 2002).
 - 보장성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므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임.
 - 즉, 투자형상품의 경우 고객이 해당상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익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보장성상품의 경우 고객이 얼마나 니즈와 부합된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임.
 - 이외에도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하다는 영국 보험업계의 반대가 있었음.

6.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보험업법의 적합성 원칙 적용사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에 대해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영업행위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 보험업법은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음.

□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2006)은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을 모델로 한 중간단계의 법률로 유가증권과 관련된 금융관련 5개 법률*을 통합한 법률임.

*증권거래법, 금융선물거래법, 상품펀드법, 투자자문업법, 투자신탁법

- 동 법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금융통합법 체제를 취하고 있고, 포괄적 정의방식을 채택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
- 그러나, 동 법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 등을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큰 차이가 있음 (증권거래법 등 일부 개정 법률 18조 및 금융상품거래법제2조2항5호⁸ 관련).
- 다만, 이들 상품 중 투자형상품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계적 성질을 고려하여 동 법의 적합성 원칙 등과 같은 공통영업행위규제를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준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은 2006년 개정된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동 법의 상품판매 및 권유와 관련된 공통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적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형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이미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동 법의 직접적인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임.
- 결국 동 법은 동일한 금융기능의 동일 규제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통합금융법의 중간단계의 법률로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존중하는 법률적 태도를 추구하였음.

<표3> 한국과 일본의 금융 관련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 비교

	한국		일본		
	자본시장 통합법	보험업법	금융상품 판매법	금융상품 거래법	보험업법
설명의무	○	○	○		○
적합성 원칙	○			○ ¹⁾	○ ²⁾
NYC Rule	○				
손해배상책임	○	○	○		○

주: 1)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은 법에서 제외
 2) 보험업법에서는 투자형보험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

□ 개정 보험업법(2006)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준용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설명의무제도와 약관교부 및 정보제공 의무가 있음.

- 개정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대상 보험계약을 ‘특정보험계약’이라고 명칭하고, “금리, 외환,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시장지표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제300조의 2).
 -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관)에 따라 특정보험계약의 범위에는 변액보험·연금, 해약환급금변동형보험·연금 및 외화표시 보험·연금 등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은 특정보험계약의 체결시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제300조의 2 및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 관련).
-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한 고객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기타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해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 상품 설명서를 ‘계약개요’와 ‘주의환기정보’로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자 자필서명이 필요한 ‘가입의향 확인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7. 국제적 비교 분석

적합성 원칙은 협의의 개념을 적합성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투자형보험에 대해 한국과 영국은 금융통합법 체제에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보험업법에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투자형보험에 대해서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의 적용이 일반적이며, 법률적 체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광의의 개념 보다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변액보험에 대해 대부분의 주에서 NAIC가 제정한 모델규칙을 준용하여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 다만, 뉴욕주 보험법은 변액보험에 대해 NASD의 자율규정을 준용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사고 및 사적연금의 불완전판매 경험 등을 통해 투자형상품은 물론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음.
 - 일본은 투자형 은행상품 및 보험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보험업법에서 투자형보험에 대해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음.

<표4> 투자정보험의 국가별 적합성 원칙 적용방식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근거	자본시장 통합법	NASD 규칙/ NAIC 규칙	COB	금융상품 거래법
대상상품	원금손실	변액보험·연금	투자·저축성	원금손실 ¹⁾
적합성 방식	협의	광의/협의	협의	협의
설명 의무	있음	있음	있음	없음 ²⁾

주: 1)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지칭.
2) 금융상품판매법에 설명의무 있음.

- 비투자정보험에 대해 영국은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미국·일본은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주(미국)에서 연금보험에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험업법상 비투자정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영국은 보장성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으나, 적극적 권유 의무의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주별, 보험종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 12개주에서 연금보험에 대한 광의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

<표5> 비투자정보험의 국가별 적합성 원칙 적용방식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근거	보험업법	NAIC 규칙	ICOB	보험업법
대상상품	전 보험종목	연금	비투자정보험	비투자정보험
적합성 방식	없음	광의	광의	없음
설명 의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광의의 적합성 원칙은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권유하는 상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한다면 권유행위가 가능하므로 엄밀한 의미에

서 적합성 원칙으로 보기 어려움.

-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은 권유하는 투자자의 정보수집과 합리적인 근거를 요건으로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유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의 보장성보험과 미국(12개 주)의 연금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8. 시사점 및 도입 방향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의 중개·대리·교차판매가 발전되어 있고 다양한 판매채널이 활성화된 국가에서 도입의 효과가 높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 다양성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비투자형보험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투자결과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보험관련법상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제도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의 개정을 통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상품의 적합성 원칙의 적용은 국가별 금융보험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이 재고된 가운데 도입이 가능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독립적인 중개 및 대리업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였음.
- 또한, 금융상품 판매채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하였음.
- 특히, 영국의 적합성 원칙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중개할 수 있는 독립금융중개인(IFA)과 보험브로커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음.

- 일본은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생·손보 간의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권유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폭이 다양한 편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상품의 중개 및 독립대리업의 기능이 미흡하고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도 제한되며, 주로 일사전속의 모집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등 판매자 등이 권유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폭이 좁음.
 - 판매하는 변액보험의 수가 몇 종에 불과한 소규모 보험회사에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권유하는 상품이 적합하지 못하면 판매가 곤란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적합성 원칙 도입에 따른 정보수집 및 상품분석 기법의 도입으로 판매 및 관리업무에 인적·물적인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금융투자상품을 폭 넓게 판매하는 타 금융권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노하우와 다양한 상품 분석기법 등이 축적되어 있는 편임.
 - 영국 금융청의 200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자 보호규제와 관련 비용 지출 중 적합성 통지서의 비용지출이 1위로 나타남.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도입은 판매자의 법률적 권유위반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투자형보험은 투자형상품과 달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작동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보험관련법령에서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보장성생명보험과, 자동차 및 상해보험 등과 같은 단기성 보험의 경우 적합성 원칙이 요구하는 지나친 개인의 사적정보 요구는 보험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보험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
-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는 투자형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형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시 법률에서 정한 원금 손실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일부의 변액상품으로 한정하여 법률 시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회사의 모집방식이 전통적인 푸시형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이 사적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적합성 원칙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함.
 -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있음.
 - 또한, CM·TM 등의 비대면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채널의 특성상 구두에 의한 정보파악과 권유 이유 등을 먼저 설명하고, 사후에 매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함.
 -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시 보험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보험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규제감독적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 향후 적합성 원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교차판매와 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하여 판매자 등이 권유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선택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